■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조합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상임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되, 상임임원의 종류는 조합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15.7.21 시행)되고, 상임임원을 두어야 하는 대상 조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중 임원을 비상임으로 둘 수 있는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삭제된 감독규정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직전 감독규정 개정시 삭제된 조문의 인용조문 수정

나. 종교단체 조합 등의 상임임원 비상임 기준 신설(안 제4조의3) 종교단체 조합 등이 상임임원을 비상임으로 두고자 할 경우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임원이 본래 자신의 업(業)에 상근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기준 충족 필요

-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18조의3)
 - 1)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 내의 항번호 순서가 조정되어, 이에 맞춰 감독규정의 조문번호를 조정
 -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명의 변경됨('05)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

3. 세부개정내용

-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 \circ 금융위원회(www.fsc.go.kr) \rightarrow 법령정보 \rightarrow 최근 제ㆍ개정 법규정보